

# 심사보고서

2020. 9. 17.

행정재경위원회

의안 번호	292
----------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7. 3. 강남구청장(주민자치과)

나. 상정의결

- 제28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9. 17.)  
“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행정국장 : 신동명)

가. 제안이유

- 자원봉사센터가 2020. 5. 26.자로 이전함에 따라 현 조례 제2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자원봉사센터 주소를 변경된 주소로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자원봉사센터 주소 변경(안 제2조제2항)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 합 의 : 강남구자원봉사센터
- 기 타 :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입법예고(2020. 6. 12.~ 7.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구경남)**

○ 강남구자원봉사센터는 1999년 개소하여 직영하다가 2001년 공개모집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현재까지 운영(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하고 있음. 센터를 강남구 선릉로 668(삼성로 8) 강남구 보건소 별관에 설치하여 운영하던 것을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으로 보건소 음압진료소와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자원봉사자의 감염 우려로 2020.5.26. 강남구 논현로 149길 64(논현동 4-22)로 이전하였음.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제2항에서는 강남구 자원봉사센터가 ‘선릉로 668’ 에서 ‘논현로 149길 64’ 로 2020.5.26. 이전되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공공시설의 설치하는 어떤 종류의 공공시설을 어디에 설치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것이고, 자원봉사센터의 ‘명칭과 위치’ 가 여기에 해당한다 할 것임.

- 안 부칙 제2조(자원봉사센터의 경과조치)는 센터를 조례도 개정하기도 전에 이전함에 따른 입법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2
----------	-----

제출년월일 : 2020. 7. 3.  
제출자 :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 주민자치과

### 1. 제안이유

자원봉사센터가 2020. 5. 26.자로 이전함에 따라 현 조례 제2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자원봉사센터 주소를 변경된 주소로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센터 주소 변경(안 제2조제2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다. 합 의 : 강남구자원봉사센터

라. 기 타 :

(1) 신 · 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2020. 6. 12. ~ 7. 0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 평가 : 원안동의

(5) 성별영향분석 평가 : 개선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2항 중 “센터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선릉로 668에 둔다.”를 “제1항에 따른 센터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논현로149길 64에 둔다.”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원봉사센터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① (생   략)</p> <p>② <u>센터는 서울특별시 강남구</u> <u>(이하 “구” 라 한다) 선릉로 6</u> <u>68에 둔다.</u></p>	<p>제2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에 따른 센터는 서울특</u> <u>별시 강남구(이하 “구” 라 한</u> <u>다) 논현로149길 64에 둔다.</u></p>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강남구자원봉사센터 주소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 발생 요인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 할 수 있음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한시적”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

### 3. 미첨부 사유

- 강남구자원봉사센터 주소 변경을 위한 개정으로 향후에도 비용 발생 요인 없음

### 4. 작성자

주민자치과 지방행정서기 양재선(02-3423-5215)